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18.2.9.] [국토교통부령 제490호, 2018.2.9., 제정]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안전사고 및 범죄의 발생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방치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사업과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근거를 일원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14569호, 2017. 2. 8. 공포, 2018. 2. 9. 시행)됨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가로구역(街路區域)의 범위, 빈집 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서류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인 가로구역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종전에는 가로구역의 범위를 도시계획도로·도시계획예정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으로 한정하면서 그 일부가 광장,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 등에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도시계획도로로 간주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단의 지역을 둘러싸는 도로의 종류에 도시계획도로·도시계획예정도로 외에도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등을 추가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인 가로구역의 범위를 확대함.

나. 정비지원기구의 업무(안 제12조)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비지원기구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의 설립 지원 및 정비사업의 설계·시공·유지관리에 대한 자문 등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90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 설립동의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2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향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

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한다.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2호다목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별표 2 제2호가목"을 "별표 2 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비사업조합"을 "정비사업조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법 제15조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법 제1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③ 주택도시시기금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합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 명의로 대지를 보존등기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또는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대지에 대한 보존등기	대지의 보존등기. 다만, 종전보다 대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는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사업시행계획 확인서(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다). 다만, 2018년 2월 9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확인서를 말한다.
-------------------------------------	---	---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